장학금 지침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0장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과 절차를 규정하여 학생들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8. 10. 4., 2019. 9. 1.)
- **제2조(장학금의 배정)** ① 장학금의 배정은 납입등록금 추정액과 고정 장학 및 특별장학생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.(개정 2018. 10. 4.)
 - ② 조교 장학금의 배정인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원 등록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한다.(개정 2018. 10. 4.)
- 제3조(장학생 선발대상) ① 장학생 선발대상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신입학 예정자(재입학 예정자 포함)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.(개정 2018. 8. 1., 2018. 10. 4.)
 - 1.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 - 2.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 - 3. 이공계지원자, 외국인,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설치 · 경영하는 각급 기관의 교직원 과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, 학교법인 계성학원이 설치 · 경영하는 각급 기관의 교직원,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설치 · 경영하는 각급 기관의 교직원, 언론인, 공무원, 교직자, 목회자 등
 - 4. 대학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는 자
 - 5. 학생학술연구장학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
 - 6.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자
 - 7. 가계가 곤란한 자
 - 8. 기타 총장 또는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
 - ② 각 장학종류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가계가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해 장학금의 수혜를 양보할 경우 명예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.(신설 2020. 3. 1.)

제3조의2(장학 종류) (삭제 2018. 10. 4.)

- **제4조(장학종류,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)** ① 일반대학원의 장학종류,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 은 별표 1과 같다.(개정 2018. 8. 1., 2018. 10. 4., 2019. 4. 3., 2019. 9. 1., 2020. 3. 1.)
 - ② 특수대학원의 장학종류,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은 별표 2와 같다.(신설 2019. 9. 1. 개정 2020. 9. 1., 2022. 3. 1.)
- 제5조(장학사정) ① 장학생은 장학금 배정액 범위 내에서 선발되며,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장학생 선발은 학과(부서)에 위임한다.(개정 2018. 8.
 - 1., 2018. 10. 4., 2019. 4. 3., 2020. 3. 1.)
 - 1. 간호학과 장학생: 간호학과
 - 2. 의학과 장학생: 의학과
 - 3. 조교장학생: 교원인사팀
 - 4. 근로장학생: 각 운영부서
 - 5. 명예장학생: 각 대학원 행정팀
 - ② 교외장학생은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며 대학원장에게 위임한다. (개정 2018. 8. 1., 2018. 10. 4.)

- 제6조(등록금 초과 중복지급 제한) 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 장학금액의 합이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.(개정 2018. 10. 4.)
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
 - 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.(개정 2018. 8. 1., 2018. 10. 4.)
 - 1. 특별장학에 해당하는 장학금
 - 2. 연구장학 중 학술연구장학금
 - 3. 면학장학 중 면학특성화장학금
 - 4. 교외장학 중 생활비, 경비, 포상, 학업장려 등에 해당하는 장학금

제7조(기타 연구장학금 지급) (삭제 2018. 8. 1.)

제8조(연구지도비) 학술연구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생의 지도교수에게는 학술연구논문지도비를 대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8, 10, 4,)

제9조(예외) (삭제 2019. 9. 1.)

부칙

- 1. 이 내규는 1973년 4월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개정내규는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이 개정내규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이 개정내규는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이 개정내규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이 개정내규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이 개정내규는 198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8. 이 개정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9. 이 개정내규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0. 이 개정내규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1. 이 개정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2. 이 개정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3. 이 개정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4. 이 개정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5. 이 개정내규는 200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16. 이 개정내규는 200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17. 이 개정내규는 200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18. 이 개정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19. 이 개정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0. 이 개정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1. 이 개정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2. 이 개정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3.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4. 이 개정내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5. 이 개정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6. 이 개정내규는 2016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- 27. 이 개정내규는 201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28. 이 개정내규는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29. 이 개정내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0. 이 개정내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31. 이 개정내규는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32. 이 개정지침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3. 이 개정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의 희망장학에 대한 시행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34. 이 개정지침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5. 이 개정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6. 이 개정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**별표 1**] 일반대학원 장학종류,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(신설 2018. 10. 4., 2019. 4. 3., 2019. 9. 1., 2020. 3. 1.)

1.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입학성적우수 장학	■ 기본자격: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1. 비사진리장학: 등록금 100% - 우리 대학교 학부 비사스칼라 장학 수혜자로 졸업한 자 중 다음의 학위과정별 요건을 충족한 자 ·석사과정, 통합과정 입학생: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.0(4.5만점) 이상인 자 ·박사과정 입학생: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.0(4.5만점) 이상이며, 석사과정 총평균평점 95점 이상인 자 - 유지조건: 직전학기 6학점(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) 이상을 신청하고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 2. 입학성적우수장학: 수업료 50% -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
성적우수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(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)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한 자 1. 성적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면학장학	 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1. 면학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공공기관 5급 이상 재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재직자 - 언론인(대외협력처에서 추천한 자) -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2. 계명복지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, 정규 직원, 무기계약직원) 또는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 -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3. 인문100년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인문100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4. 면학(이공계)장학: 수업료 45% -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자연공학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5. 면학(인문사회)장학: 수업료 35% -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6. 면학장려장학: 수업료 20% -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[공공기관(단체) 재직자, 언론인 포함]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	7. 면학특성화장학: 수업료 20% -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중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 한 자
행복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1. 행복진리장학: 수업료 100%, 입학금 100% - 의학 및 간호학 연구진리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2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- 면학(이공계)장학, 계명복지정의장학, 인문100년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 가 8분위 이하인 자 3. 행복인문사회장학: 수업료 40% - 면학(인문사회)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4. 행복복지장학: 수업료 40% -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(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) 5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 -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
외국인장학	■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
연구장학	 1. 학술연구장학: 일정액 - 연구과제 또는 연구지원사업 등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. 의학 및 간호학 연구장학: 일정액 - 의학과, 간호학과에서 연구 및 면학의욕 고취, 연구지원인력 활용을 위해 선발된 자
특별장학	1. 총장특별장학: 일정액 - 학교의 명예를 높이거나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총장이 인정한 자 2. 장애인도우미장학: 일정액 - 장애인도우미로 선발된 자 3. 계약학과특별장학: 일정액 -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개설되는 학과의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 4. 조교장학: 일정액 - 조교로 선발된 자 5. 우수학과특별장학: 일정액 - 우수학과로 선정된 학과의 학생 중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과장이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한 자 6. 근로장학: 일정액 -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	7. 비사학술원장학: 비사학술원 운영 규정 제4조(선발)제2항에 의해 선발된 자
	- 등록금 100%
	- 기숙사비, 연구비, 학기 교환학생 장학금 등
	- 해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비 일부 지원(석사학위 취득 후 우리 대
	학교와 복수 또는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해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
	에 한함)
	8. 희망장학: 일정액
	-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
	9. 정부초청장학: 일정액(사업 운영 계획에 의해 책정된 금액)
	-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(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포함)
	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	10. 복수학위장학: 수업료 100%
	- 외국대학(타대학) 출신 복수학위생의 수업연한 중 외국대학(타대학)에서 수
	학하는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학적유지(등록)를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
	• 지정기부금(기탁)장학 등: 일정액
교외장학	-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
	-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자를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

2. 2019학년도 1학기에서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입학성적우수 장학	■ 기본자격: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1. 비사진리장학: 등록금 100% - 우리 대학교 학부 비사스칼라 장학 수혜자로 졸업한 자 중 다음의 학위 과정별 요건을 충족한 자 ・석사과정, 통합과정 입학생: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.0(4.5만점) 이상인 자 ・박사과정 입학생: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.0(4.5만점) 이상이며, 석사 과정 총평균평점 95점 이상인 자 - 유지조건: 직전학기 6학점(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)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 2. 입학성적우수장학: 수업료 50% -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
성적우수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(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)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한 자 1. 성적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면학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	1. 계명복지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, 정규직원, 무기계약직원) 또는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 -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2. 이공계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자연공학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3. 인문100년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인문100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4. 면학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공공기관 5급 이상 재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재직자 - 언론인(대외협력처에서 추천한 자) -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. 인문사회장학: 수업료 40% -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6. 면학장려장학: 수업료 20% -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(공공기관(단체) 재직자, 언론인 포함) 7. 면학특성화장학: 수업료 20% -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중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
행복장학	 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1. 행복진리장학: 수업료 100%, 입학금 100% - 의학 및 간호학 연구진리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2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- 이공계정의장학, 인문100년장학, 계명복지정의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3. 행복인문사회장학: 수업료 40% - 면학장학(인문사회장학)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4. 행복복지장학: 수업료 40% -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(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수선 선발) 5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 -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
외국인장학	- 행독상약 기본사격을 궁독한 사 ■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
	1. 학술연구장학: 일정액
연구장학	- 연구과제 또는 연구지원사업 등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. 의학 및 간호학 연구장학: 일정액 - 의학과, 간호학과에서 연구 및 면학의욕 고취, 연구지원인력 활용을 위해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	선발된 자
특별장학	1. 총장특별장학: 일정액
교외장학	• 지정기부금(기탁)장학 등: 일정액 -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-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자를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

3. 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

장학 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입학성적 우수 장학	■ 기본자격: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 1. 비사진리장학: 등록금 100% - 우리 대학교 학부 비사스칼라 장학 수혜자로 졸업한 자 중 다음의 학위 과정별 요건을 충족한 자

장학 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	• 석사과정, 통합과정 입학생: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.0(4.5 만점) 이상인 자 • 박사과정 입학생: 대학교 총평균평점이 4.0(4.5 만점) 이상이며, 석사 과정 총평균평점 95점 이상인 자 - 유지조건: 직전학기 6학점(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)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을 취득 2. 입학성적우수장학: 수업료 50% -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
성적우수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(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9학점)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5점(백분율) 이상을 취득한 자 1. 성적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면학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1. 계명복지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, 정규 직원, 무기계약직원) 또는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 -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2. 이공계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자연공학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3. 인문100년장학: 수업료 50% - 2017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중 우리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인문100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4. 면학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공공기관 5급 이상 재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재직자 - 언론인(대외협력처에서 추천한 자) -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 5. 인문사회장학: 수업료 40% - 2017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생 중 우리 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과정 졸업생으로서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입학한 자 6. 면학사랑장학: 수업료 30% -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(공공기관(단체) 재직자, 언론인, 교직자 포함) 7. 면학특성화장학: 수업료 20% - 면학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 중 면학증진을 위해 대학원장이 추천한 자
행복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1. 행복진리장학: 수업료 100%, 입학금 100% - 의학 및 간호학 연구진리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

장학 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외국인장학	 2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- 이공계정의장학, 인문100년장학, 계명복지정의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3. 행복인문사회장학: 수업료 40% - 면학장학(인문사회장학)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4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 - 면학사랑장학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■ 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 1. 학술연구장학: 일정액 - 연구과제 또는 연구지원사업 등에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2. 의학 및 간호학 연구장학: 일정액
2167	- 의학과, 간호학과에서 연구 및 면학의욕 고취, 연구지원인력 활용을 위해 선발된 자
특별장학	1. 총장특별장학: 일정액
교외장학	■ 지정기부금(기탁)장학 등: 일정액 -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-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자를 장학생 선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

[별표 2] 특수대학원 장학종류,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
1. 교육대학원(개정 2019. 9. 1., 2020. 9. 1., 2022. 3. 1.)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성적우수장학	■ 기본자격: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하거나, 재학 중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(교양영어 과목 포함)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 •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복지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(교양영어 과목 포함)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1. 계명복지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및 법인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, 정규직원, 무기 계약직) 및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 - 계성학원 및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
행복장학	 1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2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 - 세대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은 순으로 선발 - 인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분위 8분위까지 선발 가능
특별장학	1. 현직교원특별장학: 수업료 30% - 유치원, 초·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(기간제, 계약직 제외), 장학사, 연구사 - 기본자격: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 신청하고 과목실격(교양영어 과목 포함) 없이 평균 85점 이상 취득한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- 등록금 범위 내 지급 2. 총장특별장학: 일정액 -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중에서 총장이 인정한 자 3. 희망장학: 일정액 -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
면학장학	■ 대상: 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면학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 1. 면학진리장학: 수업료 100% 2. 면학사랑장학: 수업료 30% 3. 면학특성화장학: 수업료 20%
교외장학	• 지정기부금(기탁)장학 등: 일정액 - 장학금 기탁자(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)가 정하는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
입학장학	• 계명면학장려장학 -계명대학교 학사 또는 석사 과정 졸업자 -입학 당해학기 수업료 40%의 장학금 지급

2. 경영대학원(개정 2019. 9. 1., 2023. 3. 1.)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입학성적	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한 자
우수장학	1. 입학성적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입학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성적우수장학	MBA학과(내국인) -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 1. 성적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 MBA학과(외국인)
	1. MBA30장학: 수업료 30% - TOPIK 4급 이상 성적 제출자 중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취득자 2. MBA50장학: 수업료 50% - TOPIK 5급 이상 성적 제출자 중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
	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 취득자 3. MBA70장학: 수업료 70% - TOPIK 6급 이상 성적 제출자 중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 실격 없이 평균 90점 이상 취득자 4. MBA100장학: 수업료 100% - TOPIK 6급 이상 성적 제출자 중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 실격 없이 평균 95점 이상 취득자
	GMBA학과-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자1. GMBA100장학: 수업료 100%2. GMBA70장학: 수업료 70%3. GMBA50장학: 수업료 50%4. GMBA30장학: 수업료 30%
면학장학	경영대학원의 발전 및 면학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 1. 면학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면학사랑장학: 수업료 30%
계명복지 정의장학	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다음의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 재직 중인 교직원 및 가족 -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
행복장학	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1. 행복정의장학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): 수업료 50% 2. 행복사랑장학(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한 자) : 수업료 30%
한마음장학	학업장려비 및 생활비 지원 특별장학금으로 경영대학원장이 추천한 자: 일정액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교외장학	장학금 기탁자(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)가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: 일정액

3. 정책대학원(개정 2019. 9. 1.)

별표 1의3 일반대학원 장학종류,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(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)을 따른다. 다만 행복장학에 대한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.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행복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
	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
	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
	1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
	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
	- 면학장학(이공계정의장학)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
	2. 행복인문사회장학: 수업료 40%
	- 면학장학(인문사회장학)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
	3. 행복복지장학: 수업료 40%
	-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(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
	우선 선발)
	4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
	-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

4. 연합신학대학원(개정 2019. 9. 1.)

별표 1의 일반대학원 장학종류,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을 따른다.

5. 예술대학원(개정 2019. 9. 1.)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입학성적우수 장학	■ 기본자격: 입학성적(총점)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된 자 1. 성적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성적우수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선발된 자 1. 성적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면학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1. 계명복지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, 정규직원, 무기계약직원) 또는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

	-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
	2. 면학장학: 국위를 선양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인 자
	- 면학정의장학: 수업료 50%
	- 면학사랑장학: 수업료 30%
행복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 1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
외국인장학	외국인학생 학사운영 지침을 적용함
교외장학	• 지정기부금(기탁)장학 등: 일정액 -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

6. 스포츠산업대학원(개정 2019. 9. 1.)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성적우수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90점(백분율) 이상을 취득한 자(성적순으로 선발) 1. 성적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면학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(학과장이 추천하는 자를 심의하여 선발) 1. 계명복지정의장학: 수업료 50% - 우리 대학교 또는 법인산하 기관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, 정규직원, 무기계약직원) 또는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 - 계성학원 또는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2. 면학정의장학: 수업료 50% 3. 면학사랑장학: 수업료 30%
행복장학	■ 기본자격: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, 차상위계층 해당자, 가계곤란자,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1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 2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
교외장학	■ 지정기부금(기탁)장학 등: 일정액 - 장학금 기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

7. 유아교육대학원(개정 2019. 9. 1., 2020. 9. 1.)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성적우수장학	■ 기본자격: 신입학 전형 성적이 우수하거나, 재학 중 직전학기에 6학점 이상을
	신청하고 과목실격(교양영어 과목 포함) 없이 평균 90점 이상을 취득한 자
	• 성적사랑장학: 수업료 30%
복지장학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(교양영어 과목 포함)
	없이 평균 85점 이상을 취득한 자(신입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
	• 계명복지정의장학: 수업료 50%
	- 우리 대학교 및 법인산하 재직 중인 교직원(전임교원, 정규직원, 무기 계약직)
	및 가족(배우자 또는 자녀)
	- 계성학원 및 신명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본인
행복장학	1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
	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
	2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
	- 세대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
	적은 순으로 선발
	- 인원이 부족할 경우 소득분위 8분위까지 선발 가능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특별장학	 1. 총장특별장학: 일정액 - 학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중에서 총장이 인정한 자 2. 희망장학: 일정액 -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
면학장학	■ 대상: 유아교육대학원의 발전 및 면학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유가 있는 자 1. 면학사랑장학: 수업료 30% 2. 면학특성화장학: 수업료 20%
교외장학	• 지정기부금(기탁)장학 등: 일정액 - 장학금 기탁자(장학재단 또는 사회단체, 기업, 개인 등)가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

8. (삭제 2022. 3. 1.)

9. 글로벌창업대학원(개정 2019. 9. 1.)

별표 1의3 일반대학원 장학종류,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(2018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)을 따른다. 다만 행복장학에 대한 장학금액 및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.

장학종류	장학금액 및 선발기준
	■ 기본자격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 없이 평균 85점 이상을
	취득한 자 중 가족의 건강보험료 환산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(신입생은
	이수학점 및 성적제한 없음)
	1. 행복정의장학: 수업료 50%
	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
	- 면학장학(이공계정의장학)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
행복장학	2. 행복인문사회장학: 수업료 40%
	- 면학장학(인문사회장학) 대상자 중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자
	3. 행복복지장학: 수업료 40%
	-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(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
	우선 선발)
	4. 행복사랑장학: 수업료 30%
	- 행복장학 기본자격을 충족한 자